

##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김한택\*\*

### 목 차

- I. 서 론
- II. 우주자원개발과 일반국제법
- III. 우주자원개발과 국제조약
  - 1. 1967년 우주조약
  - 2. 1979년 달협정
- IV. 결 론

\* 이 논문은 필자가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A Recent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ume 11, Spring 2018, Number 1)에 발표한 영어논문을 한국어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8년 11월 23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법”으로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 [htkim@kangwon.ac.kr](mailto:htkim@kangwon.ac.kr)

## I. 서론

2015년 미국은 미국 시민과 기업에게 영리목적으로 우주자원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이하 CSLCA)<sup>1)</sup>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4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편(민간항공우주기업경쟁력강화; Spurring Private Aerospace Competitiveness and Entrepreneurship), 제2편(상업적 원격탐사; Commercial Remote Sensing), 제3편(우주상업사무국; Office of Space Commerce), 제4편(우주자원의 탐사와 이용; Space Resource Exploration and Utilization)이 그것이다.<sup>2)</sup>

이 법은 미국의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에 관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인이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에게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소행성자원(asteroid resource)과 우주자원(space resource)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소행성자원이란 단일 소행성의 표면 또는 내부에서 발견되는 우주자원을 의미한다.<sup>3)</sup> 그리고 우주자원에는 물이나 광물 등이 포함되며,<sup>4)</sup> 다만 “무생물”만 이용할 수 있다.<sup>5)</sup> 만약 미생물을 발견하여도 그 미생물을 영리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이른바 ‘소행성법’(Asteroid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민간우주개발회사에 달과 소행성을 포함해 우주에서 채취한 자원의 소유권과 판매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에서 “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회수에 참여한 미국시민은, 국제법적 의무 및 관련 미국법의 범위 내에서 해당자원에 대한 점유(possess), 소유(own), 운송(transport), 이용(use), 판매(sell)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sup> 하지만 이 법은 미국이 특정한 천체에 대한 주권 및 주권적 또는 배타적

1)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Pub. L. No. 114-190, 129 Stat. 704 (2015).

2) CSLCA의 제정과정과 내용에 관하여 김영주,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항공우주 정책·법학회지 제32권 1호』, 2017, pp. 419-477 참조.

3) 51 U.S.C.A. § 51301(1).

4) 51 U.S.C.A. § 51301(2)(B).

5) 51 U.S.C.A. § 51301(2)(A).

권리나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sup>7)</sup>

2017년 7월 20일 룩셈부르크도 미국의 CSLCA를 모델로 하여 룩셈부르크 의회를 통하여 “우주자원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Law on th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을 제정하였는데, 2017년 8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룩셈부르크는 민간사업자들의 우주자원에 대한 채굴권을 보장해주는 법체계를 마련한 최초의 유럽국가가 되었는데, 동법에서 우주자원의 소유가 국제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탐사임무에 관한 승인 및 감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sup>8)</sup>

이 논문은 이러한 국내우주법(national space law or municipal space law)의 제정으로 인하여 우주자원개발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우주법이 기존의 조약과 국제관습법, 결의 및 선언 등 연성법(soft law)으로 이루어져 국제법의 한 분야인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일반국제법과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우주자원개발과 일반국제법

일반국제법상 ‘우주’라는 용어는 영어의 ‘outer space’ 또는 ‘space’를 의미하는데, ‘외기권 우주’ 또는 ‘외기권’으로도 표기된다. outer space는 ‘천체’(celestial bodies)를 포함하며, 천체는 ‘달’(moon)도 포함하고 있다.<sup>9)</sup>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의 Bin Cheng 교수는 이러한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천체사이의 공간을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으로 부르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sup>10)</sup> 우주

6) 51 U.S.C.A. § 51303.

7) SEC. 403. DISCLAIMER OF EXTRATERRITORIAL SOVEREIGNTY.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by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United States does not thereby assert sovereignty or sovereign or exclusive rights or jurisdiction over, or the ownership of, any celestial body.

8) Han Taek Kim,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A Recent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이하 Fundamental Principles로 약칭),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ume 11, Spring 2018, Number 1, pp. 38-39.

9)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Oxford, 1997, p. 527.

및 천체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Bin Cheng 교수는 우주는 마치 바다의 공해(high seas)처럼 *res extra commercium*(국제공역)으로 파악되며, 천체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0-1506)가 발견했던 신세계처럼 법적으로 실효적 점유(effective control)의 방법으로 지배할 수 있는 *res nullius*(또는 *terra nullius*, 무주지)와 같다고 하였다.<sup>11)</sup>

*res extra commercium*란 ‘불용통물’(a thing outside commerce)로서 로마법에서 유래하였는데,<sup>12)</sup> 어느 물건이 개인소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에서는 우주나 심해저 같은 국가경계선밖에 존재하는 지역을 말하기도 하는데, 동 지역에 대하여 국가들은 국가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탐사 및 이용의 자유를 가진다.<sup>13)</sup> 따라서 동지역은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곳으로 국제공동체내에서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혹시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곳을 소유, 배제, 또는 양도할 수 없다.<sup>14)</sup> 이것은 또한 *res communis*(또는 *terra communis*)라고도 표현되는데 *res communis*란 국가영토에 종속되어 편입되지 않는 곳이며, 국가영토를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으로 모든 국가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사용되고 탐사되는 곳으로 대표적인 예로 공해(high seas)를 들 수 있다. 따라서 *res extra commercium*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의 원양어선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다. 물고기를 잡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받아야 하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아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주관련 다자조약이 일반국제법상 우주 및 천체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전환시켰는가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자조약 자

10) Bin Cheng, Outer Void Space-the Reason for this Neologism in Space Law, *Australian International Law Journal*,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Australian Branch, 1999, p. 1; Han Taek Kim,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33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2018, p. 265.

11) Bin Cheng, The 1967 Space Treaty(이하 OST로 약칭), 95 *Journal du Droit International*, 1968, p. 564.

12) Rudolph Sohm, *The Institutes: A Textbook of the History and System of the Roman Private Law*,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01, pp. 320-323.

13) Kemal Baslar,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pp. 41-42.

14) Philip Steinberg,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Oce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91.

체가 일반국제법을 창설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제34조에서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동의 없이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협약 제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 협약 제34조 내지 제37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약에 규정된 규칙이 국제관습법의 규칙으로 인정된 규칙으로서 제3국을 구속하는 것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시킨 조약의 조항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제3자에게도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또한 밝히고 있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가 1961년 결의15)를 통하여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우주법 선언)16)을 결의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9가지 원칙이 천명되었는데, 원칙317)에서 어느 국가도 우주 및 천체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UN총회 결의는 단순한 권고사항이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UN총회 결의문들은 우주관계다자조약을 탄생시키기 위한 전주곡, 즉 입법촉진역할을 하였고, 그 내용이 우주관계다자조약에 전부 반영되었으며, 현 시점에서 본다면 동 선언의 발표이후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18)

### Ⅲ. 우주자원개발과 국제조약

#### 1. 1967년 우주조약

15) UNGA Res. 1721(XVI), 20 December 1961.

16) UNGA Res. 1962(XVIII), 13 December 1963.

17) “Outer space and celestial bodies are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18) Han Taek Kim, *Fundamental Principles*, *op. cit.*, pp. 39-40.

UN총회는 1959년 UN총회에 의해 설립된 우주문제의 상설위원회격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sup>19)</sup>에게 우주활동에 관한 법원칙을 정식법규로 제정하는 조약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마침내 1967년 1월 27일 60개국의 서명을 받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으로 불리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동 조약의 정식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이하 OST)<sup>20)</sup>으로 1967년 10월 10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 (1) 비전유원칙(principle of non-appropriation)

OST는 우주활동분야에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sup>21)</sup>로 불리는데, 우주법의 기본원칙을 명시한 것으로서, 우선 전문에서 “외기권에 인간이 진입함으로써 인류 앞에 전개된 위대한 전망에 고무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의 발전에 대한 모든 인류의 공동이익(common interest of all mankind)을 인정하고 …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을… 모든 사람의 이익(for the benefit of all peoples)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1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류의 영역’(the province of all mankind)이어야 한다.”

위에 명시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구절과 ‘모든 인류의 영역’의 구절은 전 우주를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CHM)으로 생각하기

19) COPUOS에는 1961년 설립된 두 개의 보조위원회, 즉 과학기술소위원회(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와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가 있다.

20) UNGA Res. 2222(XXI), 19 December 1966.

21) Rainer Arziner, On the Legal Contents and Significance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Outer Space Law, *Proceedings of the 28th Colloquium of the Law of Outer Space*, 1986, p. 208.

에 충분한 것인가? OST 제정 시부터 국가들은 동 구절의 의미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모든 인류의 영역’(province of all mankind)의 문구를 CHM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sup>22)</sup>

또한 OST는 제2조에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에 대한 ‘비전유원칙’(principle of non-appropriation)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국제법상 매우 중요하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용(專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Bin Cheng 교수는 OST는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res extra commercium*으로 그리고 달과 천체를 *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공간과 달과 천체 전부를 체약국간에는 *res extra commercium*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23)</sup> Sylvia Maureen Williams 교수도 동 조항으로 인해 달과 다른 천체들의 법적지위가 *res nullius*에서 *res extra commercium*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4)</sup> 따라서 *res extra commercium*은 15세기 이후 유럽의 국가들이 선점의 원리를 적용시켜 *terra nullius*를 점령했던 식민지 이론을 배제한 것이며,<sup>25)</sup> *res extra commercium*은 마치 해양법상 공해의 지위와 유사하여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 없고, 다만 동 지역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칙이다.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은 1961년 유엔결의<sup>26)</sup>에도 명시된 바 있지만, 전술한 1963년 우주법선언 원칙 3에 명시된 “우주와 천체는 주권의 주장, 점유 또는 기타

22) Bradley Larschan and Bonni C. Brennan,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incipal in International Law, 21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1983, p. 327.

23) Bin Cheng, OST, *op. cit.*, 564.

24) Sylvia Maureen Williams, Celestial Bodies, 11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89, p. 52.

25) Heidi Keefe, Making the Final Frontier Feasible: A Critical Look at the Current Body of Outer Space Law, 7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1995, p. 358.

26) UNGA Res. 1721(XVI), 20 December 1961.

의 수단에 의한 국가에 의해서 취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sup>27)</sup> 우주활동이 시작되던 미소냉전시기에 국가들은 우주가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충돌의 장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우주와 천체에 대한 영유권을 쉽게 포기하게 된 것이다.<sup>28)</sup> 특히 국가들은 우주를 상대국가에게 공격을 가할 기지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였는데, 당시에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을 위해서 비전유조항의 채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된 것이다.<sup>29)</sup> 이 조항은 다시 1979년 달협정(“달과 다른 천체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약”;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일명 ‘달조약’, 이하 MA)<sup>30)</sup> 제11조 2항에서도 반복되어 달은 주권주장, 사용 및 점유, 기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국가전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He Qizhi는 비전유원칙과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원칙은 빠른 시일에 관습법으로 발전된 ‘인스턴트 국제관습법’(instant customary international law)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31)</sup> 사실 이 용어는 Bin Cheng 교수가 1965년 논문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Outer Space: ‘Insta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sup>32)</sup>에서 ‘법적 확신’(opinio juris)과 관행의 관계를 설명할 때, 관습법 형성에 있어서 핵심요소는 법적확신이라고 주장한데서 기인하고 있는데, 결국 국제관습법형성에서 국가관행과 시간적 요소의 중요성이 부인되고 있다.<sup>33)</sup>

현 시점에서 비전유원칙은 국제조약법의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필자는 이에 동조하는 바이다.<sup>34)</sup> 다시 말해서 동 조항은 50년간 국가들

27) UNGA Res. 1962(XVIII), 13 December 1963.

28) Sarah Coffey,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for Property Rights to Natural Resources in Outer Space,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9, p. 125.

29) Frans von der Dunk with Fabio Tronchetti (eds.), *Handbook of Space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p. 778.

30) UNGA Resolution 34/68, 5 December 1979.

31) He Qizhi, The Outer Space Treaty in Perspective, 25 *Journal of Space Law*(이하 JSL로 약칭), 1997, p. 97.

32) Bin Cheng,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Outer Space: ‘Insta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23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65, p. 23.

33)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 Routledge, 1997, p. 46;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2호』, 2013, pp. 230-231.

34) Ricky J. Lee, “Article II of the Outer Space Treaty: Prohibition of State Sovereignty,



의 실행에서 인정된 원칙이며 그리고 OST에 가입한 당사국은 물론 비당사국에게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상 인정된 원칙이라는 것이다.<sup>35)</sup> 따라서 현대 우주법에서는 우주공간과 달과 천체 전부의 법적 지위가 *res extra commercium*화되어 이 원칙이 OST 당사국은 물론 비당사국간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비전유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에게는 이러한 비전유화는 어떠한 공적 또는 사적 실체에 의해서도 금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이건 공공기관이건 사적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유화 될 수 없다고 한다.<sup>36)</sup> 만일 어느 국가가 개인이나 사기업체에게 우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리나 점유권을 인정해 준다면 이는 국제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인데, 그 이유는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초과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Nemo plus juris transfere potest quam ipse habet)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7)</sup> 또한 몇몇의 국내법원에서 연방국가(federal states)인 경우 연방을 구성하는 주(state)나 시(cities) 및 지자체(municipalities) 등 지방정부가 우주 및 천체를 전유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국제우주법상 이러한 전유는 결코 허락될 수 없는 것이다.<sup>38)</sup>

OST 제2조가 단지 국가전유를 금지할 뿐 개인이나 사기업체의 전유는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비전유원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동 조항이 제정될 당시 국가전유의 의미는 국가는 물론 국가에 속하는 개인이나 사기업체는 당연히 비전유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조항의 제정자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우주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 중에서 개인이나 사기업체는 찾아 볼 수

---

Private Property Rights, or Both?”, 11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4, p. 141; Ram Jakhu,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32 *JSL*, 2006, p. 48; Han Taek Kim, Fifty Years of Outer Space Treaty: its retrospect and prospect(이하 OST로 약칭), 50 *Kangwon Law Review*, pp. 564-565.

35) Leslie I. Tennen, Enterprise Rights and the Legal Regime for Exploitation of Outer Space Resources, 47 *The University of Pacific Law Review*, 2015, p. 284.

36) Jakhu, *op. cit.*, pp. 44, 48; Carl Christol, Article 2 of the 1967 Principles Treaty Revisited, 9 *Annals of Air and Space Law*(이하 AASL로 약칭), 1984, p. 263; See Han Taek Kim, OST, pp. 599-583.

37) Zachos A. Palioura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The Grundnorm of International Space Law,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4, p. 50

38) See *Sullivan v. Sao Paulo*, 36 F.Supp.503 (E.D.N.Y.), *aff'd* 122 F.2d 355 (2d Cir. 1941) *recited from* Stephen Gorove, Interpreting Article II of the outer Space Treaty, 37 *Fordham Law Review*(이하 OST로 약칭), 1969, p. 352.

없었고 국가만이 활동주체였으며, 국가전유금지에는 개인이나 사기업체의 전유 금지도 당연히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약 문구상 개인이나 사기업체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이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39)</sup>

호주 노틀담 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 Australia)의 Ricky J Lee 박사도 OST 제2조의 전유화금지조항은 ‘배타적 재산권’(exclusive property right)에 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국가나 그 국민에 의한 주권행사(exercise of sovereign right)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였고,<sup>40)</sup> 실제로 2015년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2월회기 때 브라질과 러시아 대표가 미국의 CSLCA가 OST의 제2조 전유화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sup>41)</sup>

## (2) 전유가능이론(principle of appropriation)

미국 미시시피대학교(University of Mississippi) 로스쿨 교수였던 Stephen Gorove (1917-2001) 교수는 OST상 전유(appropriation)는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사용(casual or temporary use)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유라는 의미는 항구적 목적으로 재산을 배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일 어느 국가의 개인이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고 천체의 일부에 정착지를 설정하고 상업적으로 그 일부를 사용한다면 이는 국가전유에 상당하나, 국가가 동 지역에 배타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달리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42)</sup> 그에 의하면 OST 제2조는 단지 국가전유(national appropriation)를 금지하는 것이지 개인의 전유는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세계인권선언 제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OST 제1조에 명시된 ‘모든 인류의 영역’(province of all mankind)이라

39) Fabio Tronchetti,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A Proposal for a Legal Regim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p. 29-30.

40) Ricky J. Lee, *op. cit.*, p. 137.

41) Mark Sundahl, Don't muddy the message to space mining companies, *Spacenews*, June 9, 2016; Han Taek Kim, *Fundamental Principles*, *op. cit.*, pp. 40-43.

42) Stephen Gorove, *OST*, *op. cit.*, p. 352.

는 문구는 우주를 인간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sup>43)</sup> 개인이나 사기업, 국제기구도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어느 일부를 합법적으로 전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44)</sup> 한편 국가기관과는 달리 사기업의 우주자원의 상업적 활용에 관하여 미국 퍼시픽 대학교(University of the Pacific) 로스쿨의 John Sprankling 교수도 그의 저서 “The International Law of Property”에서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를 전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usufruct)의 개념을 들어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sup>45)</sup> 법해석상 “특정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다른 사항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는 법언을 OST에 적용시켜 OST가 국가전유만을 금지시킨 것은 개인이나 사적주체의 전유도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이를 허용한다고 보는 것이다.<sup>46)</sup>

1980년 Dennis Hope라는 미국인이 UN총회와 소련 정부에 편지를 보내 달을 포함해 외기권 우주 및 천체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은 인정받아야 하며, 본인은 이를 분할해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OST 제2조가 개인의 전유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국가의 비전유만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1862년 미국이 서부개척 때 활용했던 홈스테법(Homestead Act)<sup>47)</sup>처럼 누구나 원하면 우주 및 천체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UN과 소련정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지만, 현재까지도 달을 1에이커(4000m<sup>2</sup>)당 24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땅을 산 사람들에게는 등기부에 해당하는 양도증명서와 땅의 위치를 표

43) Austin C. Murnane, *The Prospector's Guide to the Galaxy*, 37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3, pp. 262-263.

44) Stephen Gorove, *Interpreting Article II of the Outer Space Treaty*, 11 *Proceedings of the Colloquium on the Law of the Outer Space*, 1968, pp. 40, 42.

45) John G. Sprankling, *The International Law of Prop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181-183, 189.

46) Alan Wasser and Douglas Jobs, *Space Settlement, Property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a Lunar Settlement Claim the Lunar Real Estate It Needs to Survive*, 73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2008, p. 47.

47) 미국 서부의 미개발 토지를 한 구역당 160 에이커(약 20만평) 씩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토지를 불하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파티션을 설치하고 12피트 x 14피트 (3.6 x 4.3m) 이상 크기의 집을 짓고, 최소 5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했다. 미국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 적이 없는 사람(해방 노예 포함)이면 누구나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 받을 수 있었으며, 이 법의 결과로 1862년에서 1986년 동안 160만의 자영농이 새로 불하를 받았으며, 이들의 면적은 총 2억 7천 에이커(약 110만 km<sup>2</sup>)에 달했는데, 미국 총 면적의 10%에 달한다. (<https://www.archives.gov/education/lessons/homestead-act>).

시한 지적도를 발부하고 있다. 또한 1996년 ‘달 대사관’(Lunar Embassy)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네브래스카 링컨대학교(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로스쿨 Frans von der Dunk 교수는 뉴욕타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Dennis Hope의 소유권은 의미 없는 권리이거나 사기”(either a hollow claim or a fraud)라고 한 바 있다.<sup>48)</sup>

한편 2004년 “Nemitz v. United States 사건”<sup>49)</sup>에서 미국 네바다주 연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vada)은 OST는 비전유원칙을 의미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 Gregory Nemitz는 “Orbital Development”를 소유한 사람인데 ‘Eros 433’이라고 부르는 소행성(astroid)을 웹사이트(website)를 통하여 2000년 3월 3일에 Archimedes Institute에 등록한 바 있다. NASA(미항공우주국)가 동 소행성에 탐사를 하려고 하자 Nemitz는 사용료 20달러를 요구했으나 NASA가 개인이 소행성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에도 없는 사항이라고 거부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법원은 OST의 어느 문구도 Archimedes Institute나 Nemitz에게 소행성에 대한 소유권을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다.<sup>50)</sup> 그러나 이 판결은 미국이 1984년 “상업우주발사법”(Commercial Space Launch Act)이후 계속해서 주장해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배척하는 판결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Nemitz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만 했을 뿐 실제로 소행성에 접근하여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것이 판결이유였기 때문이다.<sup>51)</sup>

‘주권 없는 소유권’(property right without sovereignty)은 가능한가? 21세기 초 캐리비안 해의 “스완 제도에 대한 영유권(Sovereignty over Swan Islands) 사건”이 주목할 만하다. 1971년 온두라스(Honduras)에 귀속된 스완 제도는 당시 *res nullius*였는데, 1856년 구아노 제도법(Guano Islands Act)에 따라서 ‘스완 제도 상사 회사’(Swan Islands Commercial Company)가 이 제도를 관리해온 것에 관하여 미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법적인 해석을 요구한 사건이다. 구아

48) Michael B Kelley, The Man Who ‘Owns’ The Moon Has Made Serious Bank, *Business Insider*, Mar. 26, 2013.

49) No. CV-N030599, 2004 WL 3167042, at \*1(D.Nev.Apr.26, 2004).

50) Nemitz, 2004 WL 3167042 at \*2; Blake Gilson, Defending Your Client’s Property Rights in Space: A Practical Guide for the Lunar Litigator, 80 *Fordham Law Review*, 2011, p. 1391; Bryon C. Brittingham, Does the World Really Need New Space Law?, 12 *Oregon Review of International Law*, 2010, p. 44.

51) Blake Gilson, *op. cit.*, p. 1399.

노 제도법이란 미국시민에게 무인도에 가서 비료로 쓰이는 구아노를 채취할 권한을 주었던 법이다.<sup>52)</sup> 미 법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동 회사는 이 제도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sup>53)</sup> 마찬가지로 논리로 우주와 천체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지 않은 국가에 속하는 개인이나 사기업체는 이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sup>54)</sup>

## 2. 1979년 달협정

1969년 최초로 달에서 채취된 토양이 지구에 소개되었을 때 우주의 천연자원에 관한 장래의 사용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었다. 1970년 7월 3일 아르헨티나 대표가 COPUOUS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사용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협정안을 제출하였는데,<sup>55)</sup> 마침내 1979년 12월 18일 달협정(MA)이 체결되었으며, 1984년 7월 11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MA는 제1조에 태양계(Solar System) 내에서 지구를 제외한 달과 다른 천체 및 그것의 천연자원을 제11조에 “인류공동유산”(CHM)이라고 천명하였는데, 이는 국제법상 최초로 새로운 국제영역인 CHM이 소개된 조약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sup>56)</sup> 다만 여기서 다른 천체란 태양계(Solar System)<sup>57)</sup>의 천체에 적용되는데, 이것이 태양계의 천체에만 국한되는가 아니면 은하계의 천체 등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의 과학수준을 고려하여 태양계의 천

52) Kyle A. Jacobson, From Interstate to Interstellar Commerce Incorporating the Private Sector into International Aerospace Law, 87 *Temple Law Review*, 2014, p. 161.

53) John J Davis, Sovereignty over Swan Islands, 31 U.S. Op. Att's Gen. 216, 220 (1918); Samuel Roth, Developing a Law of Asteroids: Constants, Variables, and Alternatives, 54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2016, p. 851.

54) Han Taek Kim, *Fundamental Principles*, op. cit., pp. 43-46.

55)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Legal Sub-committee, Ninth Session, UN Doc. A/AC 105/C. 2/L. 71 and Com.1, 1970.

56) Bin Cheng, The Legal Regime of Airspace and Outerspace; The Boundary Problem, Functionalism versus Spatialism; The Major Premises, 5 *AASL*, 1980, p. 81.

57) 태양계는 대략 46억 년 전 분자운의 중력붕괴로 형성된 태양과, 항성인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있는 주변 천체가 이루는 체계를 말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은 소행성대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네 개의 고체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즉 지구형 행성과, 바깥쪽에 있는 네 개의 유체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즉 목성형 행성으로 알려져 있다(<http://solarviews.com/eng/solarsys.htm>).

체만으로 국한하자는 스웨덴 주장에 동조하여 태양계의 천체를 의미하게 되었다.<sup>58)</sup> MA 제11조 1항에서 달과 그 천연자원은 CHM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 11조 2항<sup>59)</sup>에서 OST 제2조와 마찬가지로 “달은 어떠한 주권의 주장에 의해서도, 이용이나 점용의 수단에 의해서도, 또는 기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국가의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은 국가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전유원칙을 반복해서 명시하고 있다.

MA 제11조 5항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international regime)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의미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천연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MA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moratorium)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sup>60)</sup> MA는 우주의 상업적 발전을 방해하는 조약이라는 우려에서 가입국 수가 18개국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sup>61)</sup> 따라서 2008년 호주, 벨기에, 칠레, 멕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은 달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달협정은 달개발이 CHM원칙에 부합한다면 공적단체나 사적단체에 의해서 개발의 양상(modality of exploitation)을 배제하지 않으며, 그 자원의 상용화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sup>62)</sup> 2018년 10월 현재 OST의 가입국수가 107개국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우주법에서는 CHM 개념이 OST상 res extra commercium개념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sup>63)</sup>

58) UN Doc. A/AC. 105/196.

59) 달협정 11조 2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moon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an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60) Sylvia Maureen Williams. *Celestial Bodies*, *op. cit.*, p. 53: Eilene Galloway,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5 *AASL*, 1980, p. 500; 김한택,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1권 1호』, 2006, p. 222.”

61) Henry R. Hertzfeld and Frans von der Dunk, *Bringing Space Law into the Commercial World: Property Rights without Sovereignty*, 6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5, p. 85; 2018년 10월 현재 MA 비준국은 18개국밖에 안 되는 소수(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이며, 프랑스, 과테말라, 인도, 루마니아가 서명국인데 프랑스와 인도만이 우주개발국에 속한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우주개발국들이 가입하지 않았고, 한국, 일본도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62) Virgine Blanchette-Seguín, *Reaching for the Moon: Mining in Outer Space*, 49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2017, p. 963.

## IV. 결 론

Bin Cheng 교수의 주장대로 일반국제법상 우주가 *res extra commercium*, 달과 다른 천체들이 *res nullius*의 지위를 가졌던 것이 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res nullius*에서 *res extra co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 필자는 동의한다. 따라서 우주와 천체는 모두 *res extra commercium*이 되어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역시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MA 제11조 2항도 우주조약 제2조의 ‘비전유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MA의 이 조항은 OST와는 달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당사국들만 구속하겠지만 이미 OST에서 국제관습법의 지위가 확보된 만큼 조약의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한 사항은 MA는 태양계 내에서 지구를 제외한 달과 다른 천체 및 그것의 천연자원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데 반해, OST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에 있는 천체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두 국가가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OST 제2조 및 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63) See Han Taek Kim, Thirty Years of the Moon Agreement: its retrospect and prospect, 55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0, pp. 79-99; Han Taek Kim, *Fundamental Principles*, op. cit., pp. 46-49.

필자는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9년 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CHM개념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처럼 장래에 우주 및 천체의 경영, 개발, 분배에 국제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국가들이 이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해양법상에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모든 당사국을 회원으로 하여 자메이카에 설치된 기구로서, 심해저자원을 관리하며, 심해저의 자원을 탐사 개발하는 심해저활동을 조직 통제하는 기구인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있다.<sup>64)</sup>

그러면 이러한 우주와 천체에 대한 *res extra commercium*의 지위는 지구의 공해에 대한 *res extra commercium*과는 어떻게 다른가? 공해상 자원채취행위와 우주자원개발은 달리 생각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공해상 자원채취는 어로행위의 경우 별문제 없이 능력에 따라 채취할 수 있으나 심해저자원의 경우는 유엔해양법협약상 CHM지역이므로 국제기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므로 달과 천체에 고정되어 있는 우주자원과는 자원의 성질과 형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체가 이러한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일정구역을 확보한 후 자원채취 또는 채굴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국제법상 비전유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자원수집을 위해서 일정구역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수 있는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

64) 국제심해저기구에 관하여 박찬호·김한택, *국제해양법* 제3판, 와이북스, 2016, p. 163 참조.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sup>65)</sup>

---

65) Han Taek Kim, *Fundamental Principles*, *op. cit.*, pp. 51-52.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영주,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 김한택,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6.

### [외국문헌]

- Baslar Kemal,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 Bilder Richard B, *A Legal Regime for the Mining of Helium-3 on the Moon: U.S. Policy Option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0).
- Blanchette-Seguine Virgine, *Reaching for the Moon: Mining in Outer Space*, 49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2017).
- Cheng Bin, *The Legal Regime of Airspace and Outerspace; The Boundary Problem, Functionalism versus Spatialism; The Major Premises*, 5 *Annals Air and Space Law*, (1980).
-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Oxford, 1997).
- Cheng Bin, *Outer Void Space-the Reason for this Neologism in Space Law*, *Australian International Law Journal*,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Australian Branch, (1999).
- Coffey Sarah,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for Property Rights to Natural Resources in Outer Space*, 41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9).
- Gilson Blake, *Defending Your Client's Property Rights in Space: A Practical Guide for the Lunar Litigator*, 80 *Fordham Law Review*, (2011).
- Gruner Brandon C, *A New Hope for International Space Law: Incorporating Nineteenth*

- Century First Possession Principles into the 1967 Space treaty for the Colonization of Outer Sp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35 *Seton Hall Law Review*, (2004).
- von der Dunk Frans et al., *Surreal Estate: Addressing the Issue of “Immovable Property Rights on the Moon”*, 20 *Space Policy*, (2004).
- von der Dunk Frans with Tronchetti Fabio (eds.), *Handbook of Space Law* (Edward Elga Publishing, 2015).
- Harn Norry, *Commercial Mining of Celestial Bodies: A Legal Roadmap*, 27 *The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view*, (2015).
- Hertzfeld Henry R and von der Dunk Frans, *Bringing Space Law into the Commercial World: Property Rights without Sovereignty*, 6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5).
- Galloway Eilene,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5 *Annals of Air and Space Law*, (1980).
- Gorove Stephen, *Interpreting Article II of the Outer Space Treaty*, 37 *Fordham Law Review*, (1969).
- Haanappel, P. P. C., *The Law and Policy of Air Space and Outer Space-A Comparative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Jacobson Kyle A, *From Interstate to Interstellar Commerce Incorporating the Private Sector into International Aerospace Law*, 87 *Temple Law Review*, (2014).
- Jakhu Ram,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32 *Journal of Space Law*, (2006).
- Keefe Heidi, *Making the Final Frontier Feasible: A Critical Look at the Current Body of Outer Space Law*, 7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1995).
- Kim Han Taek, *Thirty Years of the Moon Agreement: Its Retrospect and Prospect*, 55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0).
- Kim Han Taek, *Fifty Years of Outer Space Treaty: its retrospect and prospect*, 50 *Kangwon Law Review*, (2017).
- Kim Han Taek,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33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2018).
- Kim Han Taek,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A Recent*

-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11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Spring (2018).
- Landry Benjamin David, *A Tragedy of Anticommons: The Economic Inefficiencies of Space Law*, 38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3).
- Larschan Bradley and Brennan Bonni C,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incipal in International Law*, 21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1983).
- Lee Ricky J, *Article II of the Outer Space Treaty: Prohibition of State Sovereignty, Private Property Rights, or Both ?*, 11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4).
- Matte Nicolas M, *Limited Aerospace Natural Resources and Their Regulation*, 7 *Annals of Air and Space Law*, (1982).
- Murnane Austin C, *The Prospector's Guide to the Galaxy*, 37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3).
- Nelson T, *The Moon Agreement and Private Enterprise: Lessons from Investment Law*, 17 *ILS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1).
- Paliouras Zachos A,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The Grundnorm of International Space Law*,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4).
- Qizhi He, *The Outer Space Treaty in Perspective*, 25 *Journal of Space Law*, (1997).
- Roth Samuel, *Developing a Law of Asteroids: Constants, Variables, and Alternatives*, 54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2016).
- Sprankling John G, *The International Law of Prop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Steinberg Philip,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Oce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Tan David, *Towards a New Regime for the Protection of Outer Space as the Province of All Mankind*, 25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0).
- Tennen Leslie I, *Enterprise Rights and the Legal regime for Exploitation of Outer Space Resources*, 47 *The University of Pacific Law Review*, (2015).
- Tingkang Andrew, *These Aren't the Asteroids You Are Looking For: Classifying Asteroids in Space as Chattels, Not Land*, 35 *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2012).
- Tronchetti Fabio,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A Proposal for a Legal Regim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 Wasser Alan and Jobes Douglas, *Space Settlement, Property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a Lunar Settlement Claim the Lunar Real Estate It Needs to Survive*, 73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2008).

Williams Sylvia Maureen, *Celestial Bodies*, 11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89).

## 초 록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록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우주조약(OST), 달협정(MA), 비전유원칙,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 인류공동유산(CHM),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PUOS),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 유엔해양법협약(UNCLOS).

## Abstract

###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Han-Teak Kim\*

Professor Bin Cheng said that outer space was *res extra commercium*, while the moon and the other celestial bodies were *res nullius* before the 1967 Outer Space Treaty(OST). However, Article 2 of the OST made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have the legal status as *res extra commercium*, not appropriated by any country or private enterprises or individual person, but the resources there can be freely available, as those on the high sea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was introduced to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 Whether or not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is binding for the non-parties of the OST, many scholars see this principle as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even developing into *jus cogens*. Article 11(2) of the Moon Agreement(MA) reconfirm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of Article 2 of the OST, but it has much less effect than the OST because the MA binds only the 18 parties involved. The MA applies only to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other than the Earth in the Solar System, the OST's application scope extends to the Galaxy because the OST has no such substantive enactment.

As referred to in the 2015 CSLCA of USA or Luxembourg's Law of Space Resources, allowing individuals and enterprises run by other countries to commercially explore and utilize the space resources, the question may arise whether this violate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under Article 2 of the OST and Article 11 of the MA. In the case of the CSLCA, the law explicitly specifies that sovereignty, possessory rights, and judiciary rights to a specific celestial body cannot be claimed, let alone ownership. This author believes that this law respects

---

\*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School of Law,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as *res extra commercium*. As long as any countries or private enterprises or individuals respect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of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they could use, exploit it. Another question might be raised in the difference between *res extra commercium* on the high seas and *res extra commercium* in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Collecting resources on the high seas and exploiting space resources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On the high seas, resources can be collected without any obstacles like fishing, whereas, in the case of the deep sea-bed area,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inciples under the UNCLOS should be operated by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s an international regime. The nature or form of the sea resources found on the high seas are thus different from that of space resources, which are fixed on the moon and the celestial bodies without water. Thus, if individuals or private enterprises collect these resources from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they might secure a certain section and continue collecting or mining works without any limitation. If an American enterprise receives an approval from the U.S. government, secures the best location and collects resources on the moon, can other countries' enterprises access to this area? How large the exploiting place can be allotted on the moon? How long should such a exploiting activity be lasted?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space law, these matters might be handl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irst come, first served." As a consequ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rovide a guideline or a proposal for the settlement of any foreseeable disputes during the space activity to solve plausible space legal questions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Outer Space Treaty, Moon Agreement, non-appropriation principle, *res extra commercium*, Common Heritage of Mankind), COPUOS, CSLCA, UNCLOS